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 일본 도쿄지방법판소의 디지털토큰 관련 판결을 소재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글로벌테크경영전공 부교수 천 창 민

*논문접수 : 2025. 10. 20. *심사개시 : 2025. 10. 22. *게재확정 : 2025. 11. 10.

〈목 차〉

I. 서론	1. 도쿄지방법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II. 도쿄지방법판소 판결의 소개	2.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축규칙과 HCCH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
1. 사안의 개요: 당사자와 사실관계	
2. 주요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3. 주요국에서의 논의 및 입법 현황
3. 도쿄지방법판소 판단의 요지	
III. 도쿄지방법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UNIDROIT 및 HCCH를 비롯한 외국에서의 입법현황과 논의에 대한 소개를 겸하여	I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에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대명사일 정도로 전통 금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전통적인 금융은 은행 등과 같은 신뢰 기관(중개기관)의 존재를 필수로 하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할 경우 중개기관의 존재 없이도 분산원장기술 자체에 내장된 신뢰 메커니즘에 의해 이중지급(double spending) 없이 안전하게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¹⁾ 아울러 블록체인 2.0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체인의

* 이 글의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부 의견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나 추후 연구에서 다룰 것을 약속드린다.

1) 물론, 분산원장기술은 현재까지 전통적인 전산시스템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등 그 한계로 인해 전통적인 전산시스템을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다.

출현은 스마트컨트랙트라는 조건문 프로그램²⁾의 내장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분산원장기술의 출현은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미래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진보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산원장기술의 급격한 보급은 실질법적으로는 물론 국제사법적으로도 상당한 과제를 노정한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은 인터넷망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토큰³⁾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사법적 분석을 요한다. 영국은 물론 대륙법계 국가의 전통적인 국제사법적 분석의 방법론은 성질결정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된 법률행위별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결점(국제재판관할의 경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결점(준거법의 경우)을 찾아 해당 연결점이 있는 국가의 법원과 법체계를 찾는 방법론을 취한다. 이때 그 연결점은 당사자 자치에 의한 주관적 연결을 제외하고는 물리적 장소를 연결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 복수의 노드가 존재하는 분산원장기술에서는 이같이 물리적 장소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연결점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실질적 관련이 있는 또는 가장 밀접한 연결점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토큰이 관여된 국제사법적 분석에서 실질적 관련지 내지 최밀접관련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국제사법의 방법론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2023년 5월 디지털토큰의 물권적 쟁점과 관련한 실질법 원칙을 마련하는 가운데, 원칙 5에서 저촉규칙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도 2022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개정 작업을 통해 제12편을 신설하여 디지털토큰의 물권적 측면과 관련한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특칙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 그 물적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나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⁴⁾을 전자증권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고 PRIMA(관련중개기관접근법)를

2) 스마트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아니라 조건문 프로그램이다. 이 점에서 이를 스마트계약이라고 번역하는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로 표기하기로 한다.

3)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가상자산,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특정국가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경도되지 않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분산원장기술과 관련하여 생성된 모든 디지털적 증표 즉, 토큰이라는 사법적 측면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4) 규제법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토큰증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토큰증권이라고 할 경우 증권의 한 유형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권토큰 또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화한 저촉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나 국제사법적 측면에 관한 고려는 전무하다. 이 가운데 2024년 5월 15일 키오프회의를 시작으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에서 디지털토큰의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및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등 국제사법 전반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적 움직임은 없으나, 2024년 4월 도쿄지방법재판소에서 일본 최초로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다룬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 논리전개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나 동 판결은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도쿄지방법재판소의 동 판결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국제적 분쟁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이어, 도쿄지방법재판소의 동 판결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더불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비롯한 주요국에서의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입법 현황과 논의 등을 소개하고(Ⅲ), 마지막으로 외국에서의 입법 논의 및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법에의 함의를 겸한 맺음말을 도출한다(Ⅳ).

Ⅱ. 도쿄지방법재판소 판결⁵⁾의 소개

1. 사안의 개요: 당사자와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

2020년 도쿄지방법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외환거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인 아바 트레이드 리미티드(アヴァトレード リミテッド)와 동사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비트코인 등을 취급하는 일본의 가상통화⁶⁾거래소 코인체크(コインチェック)를 운영하는 코인체크 주식회사와 동사의 대표이

5) 東京地方裁判所 令和 2年 (ワ) 第19906号, 令和6年 4月25日 民事 第43部 判決, LEX/DB25615546. 이하, 동 도쿄지방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사실관계를 비롯한 소개는 LEX/DB25615546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6) 이 글에서는 동 판결과 관련한 소개에서는 판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일본은

사이다.⁷⁾

이 사건은 미국의 가상통화거래소 크라켄⁸⁾에 비트코인을 예탁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가상통화거래소 코인체크의 운영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당시 예탁 중이던 위 비트코인이 유출되어 상실된 피해는 피고의 불법행위¹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되었고,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소 제기 시점의 위 비트코인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금 778,795,191엔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다음날인 2017년 9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피고가 자금세탁방지체계 정비, 의심거래조사, 계정동결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 건 비트코인이 최종 피고가 관리하는 혼합계정¹¹⁾에 혼입되어 이후의 이력 추적이 불가능해졌고,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¹²⁾

도쿄지방법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결정하였고, 이유는 알 수

2009년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채택하였고, 이후 재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7) 동 판결에서 재판관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는데, 이는 일반관할로서 피고의 주사무소가 있는 일본에서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8) 크라켄은 Payward, Inc.가 2011년에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토큰거래소 중 하나로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2024년 Forbes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디지털토큰거래소이다.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 미국의 최대 디지털토큰거래소는 코인베이스이다.

9) 예탁이라는 용어는 유가증권의 혼장임치와 권리의 관리라는 혼합계약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나, 도쿄지방법판소는 디지털토큰의 위탁보관에 대해서도 예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0)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최초 크라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해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도 잠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해킹이 발생한 크라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킹을 당한 자신의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피고의 혼합계정에 혼입되면서 더 이상 추적이 불가하게 되어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2017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피고의 혼합계정으로 원고의 비트코인이 입고된 시점에 발생하였다.

11) 판결의 설시상 이 혼합계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는 피고 고객들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옴니버스계정으로 보면 무난하다고 본다.

12) 이해의 편의를 위해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원고는 피고 코인체크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비트코인은 제3자인 해커의 해킹으로 인해 우연히 피고가 관리하는 혼합계정으로 유입된 것인데, 혼합계정으로 유입된 상황에서 원고의 비트코인이 누구 명의의 계좌로 연결된 것인지를 원고는 알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으나 원고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아 동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에 동 판결이 디지털토큰과 관련하여 일본 최초로 국제사법적 쟁점을 고려한 판결이 되었다.¹³⁾

나. 주요 사실관계: 원고가 크라켄에 예탁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무단출금 경위

원고는 2017년 7월 28일(협정세계시)까지 크라켄을 이용하는 ‘크라켄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정(이하 ‘본건 계정’)을 생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크라켄이 본건 계정을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570.00119 BTC(이하 ‘본건 비트코인’)를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7월 28일 및 동월 30일, 누군가가 원고의 계정에 접속하여, 상위 4자리가 〇〇〇〇인 주소(이하 ‘본건 출금용주소’)를 출금용 주소로 추가하였다. 같은 날 크라켄이 관리하는 복수의 주소를 인풋 주소로 하고, 본건 출금용주소를 포함하는 복수의 주소를 아웃풋 주소로 하는 트랜잭션이 생성되었으며, 이 중 본건 출금용주소로 송금된 비트코인 수량은 본건 비트코인 수량과 동일하다. 나아가 본건 출금용 주소에서 직간접적으로 상위 4자리가 〇〇〇〇인 주소(이하 ‘본건 출금처주소’)로 약 569.98874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트랜잭션이 생성되었다(이하, 이 일련의 조작에 의한 송금을 ‘본건 출금’이라 한다).

본건 출금 후, 본건 출금용주소 및 본건 출금처주소를 기점으로 다수의 주소에 대해 여러 분기를 거쳐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이후 피고가 개인암호키를 관리하는 주소로 송금하는 트랜잭션이 생성되었다. 즉, 2017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합계 570.66723 비트코인이 상위 4자리 〇〇〇〇인 주소(피고 관리주소 1-1)를 아웃풋 주소로 하여, 9월 1일에는 약 0.94131 비트코인이 상위 4자리 〇〇〇〇인 주소(피고 관리주소 1-2)를 아웃풋 주소로 하여 각 송금되는 트랜잭션이 생성되었다(피고 관리주소1에 대한 합계 약 571.60854 비트코인의 위 각 주소로의 송금을 ‘피고 관리주소 1 송금’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관리주소1에 송금된 비트코인은 다른 비트코인과 혼용되어, 피고가 개인암호키를 관리하는 다른 주소인 상위 4자리 〇〇〇〇의 주소(피고 관리주소 2-1) 및 상위 4자리 〇〇〇〇의 주소(피고 관리주소2-2)를 각각 아웃풋 주소로 하여, 합계 약 775.4479 비트코인이 송금되는 트랜잭션이 생성되었다.

13) 일본 최초의 판결임에도 아직까지 동 판결에 대한 평석은 전무하다.

2. 주요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¹⁴⁾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피고의 행위로 (1) 원고의 본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는지, (2)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재산적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3)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Property Right(PR)의 불가침성이 침해되었는지, (4)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UTXO를 이전할 수 있는 지위가 침해되었는지, 마지막으로 (5)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 이다. 아래에서는 판결문과 같이 각 쟁점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가. 원고의 소유권 침해 여부(쟁점 1)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권 등의 침해에 관한 주장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원고가 크라켄에 위탁한 본건 비트코인에 관해 어떤 권리를 취득했고,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가라는 법률문제(이하 ‘본건 선결문제’)는 피고의 불법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준거법이 정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본건 선결문제는 ①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관해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본건 선결문제 1), ② 본건 출금으로부터 피고 관리주소 1 송금까지 사이에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권리를 상실할 원인이 있었는지(본건 선결문제 2), ③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권리를 일본법상의 ‘소유권’으로 대체(讀み替え)할 수 있는지(본건 선결문제 3)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세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본건 선결문제 1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본건 비트코인에 관해 채권을 취득한 것이 문제 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물권을 전제로 하고, 통칙법¹⁵⁾에서 규정하는 법률관계 중 관련되는 것은 통칙법 제13조뿐이다. 이에 원고는 비트코인을 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동산’에 포함시키고, 본건 선결문제 1을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득실’에 관한 법률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사법에서 포용력 있게 법개념을 파악해야 한다는 해석지침에 부합하며, 이렇게

14) 당사자의 주장은 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15) 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平成18年 法律第78号).

해도 연결점을 적절히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비트코인의 구조상 본건 선결문제 1에 통칙법 제13조 제2항을 직접 적용해 ‘목적물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없고, 동조의 취지는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성질상 물권이 목적물 소재지의 공익과 밀접히 관련되고, 공익보호(제3자에 대한 거래보호)상 소재지법에 의하지 않으면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여기에 더해,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예탁을 담당하는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 거래소가 특정 국가와의 결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공익보호가 도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해될 비트코인에 관한 법률문제의 연결점은 당해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예탁되어 있는 때에는 그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본건 선결문제 1에 관하여 보자면, 본건 비트코인이 예탁되어 있던 크라켄을 운영사의 본점 소재지인 캘리포니아주가 연결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본건 선결문제1을 검토하면, 미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례(*G.S. Rasmussen & Assocs., Inc. v. Kalitta Flying Serv., Inc.*, 958 F.2d 896 (9th Cir. 1992), 이하 ‘본건 판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건((i)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의 내용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것, (ii) 그 이익을 배타적으로 점유 또는 컨트롤할 수 있을 것, (iii) 추정소유자가 배타적인 이익의 향유를 주장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을 만족하면 *property right*(이하 ‘PR’)으로 보호된다.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관해 가지는 권리는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PR로서 보호된다.

② 다음으로, 본건 선결문제 2와 관련하여, 본건 출금에서 피고 관리주소1 송금까지 사이에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와 점유의 일치’ 법리는 비트코인에 타당하지 않다.

③ 마지막으로, 본건 선결문제3과 관련하여 물권의 ‘효력’ 문제는 통칙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 본건 선결문제1에서와 같이, 비트코인을 동조 소정의 ‘동산’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그 연결점을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예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 운영사업자의 본점 소재지로 본다. 따라서 본건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그 효력이 문제 되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에는 코인체크에 예탁되어 있었으므로 연결점은 일본이 된다. 그러므로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권리의 효력을 검토해야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권리는 캘리포니아주법상 PR로서 보호되는 것으로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운 준거법인 일본법 아래에서 유사한 권리로 대체할 수 있다. PR은 객체의 배제·양

도·점유 및 이용·파괴 등을 하는 ‘권리의 묶음’으로서 관념되며, 다른 한편 객체의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이 인정되는 일본법상의 소유권은 PR과 유사하다. 그리고 일본법상 소유권에 대하여는 (i) 객체의 유체물성 및 (ii)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요소로 한다는 해석도 있으나, (i) 유체물성에 관해서는 무체물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물건법리나 물(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무체물도 상황에 따라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될 수 있다. (ii) 배타적 지배가능성에 대하여는 개인암호키를 가진 자만이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¹⁶⁾를 다른 주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유체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PR을 일본법상 소유권으로 대체하더라도 일본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이상에 의하면, 원고가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가지던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PR은 그 효력이 문제 되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에는 본건 비트코인의 소유권으로 대체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원고의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본건 사실관계 즉, 본건 비트코인을 크라켄에 예탁했다거나, 크라켄에서 본건 비트코인이 보정 유출되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정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우선 주장한다. 가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애초에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라는 선결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고, 캘리포니아주법상 PR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가사 그 같은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피고 관리주소 1 송금으로 원고는 그 권리를 상실했고, 그 후의 준거법인 일본법에 따른 소유권으로의 대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국제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통칙법 제22조 제1항 및 민법 제709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같은 결론에 이르므로 어느 점에서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선결문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국제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된 권리가 외국법하에서 성립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원이 반드시 선결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당하

16) UTXO 미사용 거래출력값(잔액)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위해 사용된 UTXO는 소멸하고, 잔돈 내지 잔액로서 새로운 UTXO가 생성된다.

고, 당해 사안의 특질 및 당해 소송의 구체적인 상황 등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소송운영이라는 고려를 포함하여 선결문제의 검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원고는 개인암호키를 가지지 않은 자가 비트코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어느 법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외연이 명확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본건 선결문제 1의 준거법으로 주장하는 캘리포니아주법하에서 PR의 인정요건인 ‘배타적으로 이익을 점유 또는 통제할 수 있을 것’을 결여함이 명백하므로 선결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② 본건 선결문제 1에 대하여, 가사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크라켄에 위탁하여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했다는 법률문제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해도, 위 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R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결여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본건 선결문제 2에 대해서는 본건 비트코인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사유로서 피고 관리주소 1 송금을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이 법률문제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일본법의 해석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해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권한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견해에 선다고 해도 사실상의 지배를 가진 자는 개인암호키를 가진 자로 한정된다. 그리고 금전과 같은 가치적 권능(지급단위)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해당 권능이 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체물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자라는 법리(소유와 점유의 일치)가 타당한바, 비트코인은 채무면책력이라는 가치적 권능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지급단위라는 가치적 권능이 블록체인상의 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소유와 점유의 일치의 법리가 타당해야 한다. 따라서 본건 비트코인은 피고 관리주소 1 송금에 의해 피고가 그 사실상의 지배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권리를 피고가 갖기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면에서 원고는 관련된 권리를 잃었다.

④ 본건 선결 문제 3과 관련하여,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권리를 일본법상의 소유권으로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법상의 PR과 유사한 권리로서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일본법상의 소유권을 관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일본법의 해석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가해, 개인암호키를 관리하고 스스로 가상통화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네트워크 참가자)에 주목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온바, 네트워크 참가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재산권을 수반하는 일이

없다는 견해나,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물권에 관한 법리의 유추 등의 가능성을 논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하급심 재판례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복수이다. 더욱이,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을 예탁하는 자 등의 네트워크 비참가자는 개인키를 통한 비트코인의 배타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학설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일본법상의 소유권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과 유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일본법에서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PR의 효력을 주장·대항할 수 없다.

⑤ 통칙법 제22조 제1항¹⁷⁾ 및 일본 민법 제709조¹⁸⁾의 취지에 근거한 검토로서, 위 ①~④의 검토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국제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이 결론은 통칙법 제22조 1항 및 민법 제70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제불법행위 사안에서 이에 상당하는 국내 사안(섭외적 요소를 국내로 대체하여 상정되는 사안)에 관하여 일본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통칙법 제22조 제1항 및 일본 민법 제709조의 취지를 적용하여, 관련한 국제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본건에서 가사 원고가 일본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상통화거래소에 본건 비트코인을 예탁하고 있었을 경우에 부정한 출금이 이루어지고, 피고 관리주소 1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가상통화거래소에서의 개별 주소에 대한 개인암호키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권리를 가지지 않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통칙법 제22조 제1항 및 민법 제709조의 취지를 적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국제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나.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재산적 가치’의 침해 여부(쟁점 2)

원고는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PR을 취득하고 있던 중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관계에서 이를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유권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도

17) 제22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서에 따른 제한 규정으로서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에 대해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실이 일본법에 따라 불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그 밖의 처분의 청구는 할 수 없다.”

18) 일본 민법 제709조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다.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재산적 가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0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즉, ‘권리의 대체’라는 논의는 물건에 관한 통칙법 제13조의 규율에 근거한 것이므로, 민법 제70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잘못이 있다. 또한 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함으로써 즉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잘못이 있다. 원고는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PR을 일본법상의 권리 또는 이익으로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주장·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익으로서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권리·이익이란 소유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쟁점 2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쟁점 1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같으므로 쟁점 2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쟁점 1과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다.

다.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Property Right의 불가침성 침해 여부(쟁점 3)

원고는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PR을 취득했기 때문에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관계에서 이를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유권이나 ‘재산적 가치’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코인체크에서 지배가능성을 잃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돌아간다면 원고는 다시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PR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는 민법 제70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민법 제709조에 따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권리의 대체’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권리를 대체한 결과 일본법상의 권리·이익으로서 대체할 수 없었던 때에는 일본법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일본법상의 소유권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PR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이로써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어떠한 권리 또

는 이익을 갖는 것은 개인암호키를 가진 자로 한정되므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는 원고에게 관련한 권리 또는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라. 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UTXO 이전 지위 침해 여부(쟁점 4)

원고는 본건 비트코인이 PR의 객체로서 보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트코인의 UTXO를 이전하는 것은 자금결제법상 인정된 행위이며, 본건 비트코인의 정당한 보유자인 원고는 부정한 수단으로 본건 출금을 실행한 자 또는 본건 비트코인 양수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범죄 피해 재산과 관련한 몰수 또는 그 가액 추징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피해회복금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UTXO를 이전할 수 있는 지위는 민법 제709조에 따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기술한 것과 동일한 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즉, 원고는 본건 비트코인을 예탁하고 있던 크라켄이 관리하는 주소의 개인암호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본건 비트코인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기초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 여부 (쟁점 5)

본건 비트코인의 이전 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건 출금에서 피고 관리주소 1 송금까지의 일련의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본건 출금을 실행한 절취자 또는 이와 긴밀하게 제휴한 공모자(절취자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절취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본건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피고가 피고 관리주소 1 송금 이전, 피고 관리주소1 송금 발생 시, 피고 관리주소 1 송금 후의 각 단계에서 자금세탁방지 태세의 정비, 의심거래조사, 계좌동결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본건 비트코인이 최종 피고의 풀링주소에 혼입되어 그 이후의 거래 이력을 추적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가 절취자 등에 의한 본건 비트코인의 출금 등을 함부로 방치함으로써 본건 비트코인에서 유래하는 비트코인 등의 재산적 가치를 강제집행 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권은 피고의 행위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본건 청구권이 피고의 행위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즉, 원고는 절취자들에 대하여 본건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다투지만, 원고는 크라켄 운영사에 대해 소정의 비트코인을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채권적인 권리(크라켄 채권)를 잃지 않았으므로 절취자들의 행위에 의해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며 애초에 본건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의해 본건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투지만,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건 비트코인이 피고 관리주소1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본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최종 폴링 주소에 도달한 후에는 본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관계가 필요하지만, 이에 관해 입증되지 않았다. 나아가 책임재산 감소시키는 유형의 채권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3. 도쿄지방법판소 판단의 요지

도쿄지방법판소(이하 이 절에서 ‘재판소’라고 한다)은 위 쟁점 1~5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특히 쟁점1에 대해 상세한 판단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쟁점1에 대해 보다 상세히 소개한 후 쟁점 2~5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가. 쟁점 1(원고의 소유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크라켄에 예탁하고 있던 원고의 본건 비트코인이 부정하게 유출되었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크라켄과의 계약관계에 관해 밝히지 않아, 재판소는 원고가 7월 28일 당시에 본건 계정의 관리자였는지 여부, 원고가 같은 날까지 어떠한 경위를 거쳐 본건 비트코인을 취득하여 크라켄에 예탁하였는지, 같은 날 이후의 본건 계정에 대한 접근 및 본건 출금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원고가 7월 28일까지 본건 계정의 관리권을 취득하고, 크라켄 운영사와의 사이에서 매매를 통해 취득한 본건 비트코인을 크라켄에 예탁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이후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본건 계정에 대한 부정한 접근으로 인해 본건 출금이 실행되었다고

전제하고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먼저, 선결문제 즉, 원고가 크라켄에 예탁하고 있던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고, 피고의 불법행위 시에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재판소는 통칙법상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단위법률관계를 관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⁹⁾ 그리고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본건 선결문제1)와 관련하여 원고가 크라켄을 통해 본건 비트코인을 취득·관리하고 있던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곳을 캘리포니아주, 이 단위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동 주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크라켄에 예탁한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재판례(958 F. 2d 896(9th Cir.1992), 본건 재판례)가 제시한 요건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하나인 property right(PR)를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지적하는 본건 재판례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익을 갖는 것이 PR로서 보호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에서는 특정 비트코인의 UTXO에 연결된 주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인암호키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유하는 자가 당해 UTXO에 기한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전속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구조이고, 네트워크 비참가자, 즉,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비트코인의 관리를 의뢰하는 등 네트워크 참가자를 통해 이용하는 자는 자신이 예탁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관되고 있는 주소의 개인암호키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비참가자인 원고는 원고에게 할당되어 본건 비트코인이 관리되고 있던 개별 주소에 대해 개인암호키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법상의 논의로서 네트워크에 참가하여 스스로 개인암호키를 관리하는가 여부에 주목하여 비트코인과 관련한 권리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특정 비트코인의 UTXO에 연결되는 주소에 대응하는 개인암호키를 가지지 않는 원고는 크라켄에 예탁하고 있는 이상,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배타적인 이익의 점유 또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위 캘리포니아주 재판례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재판소는 판단하였다.²⁰⁾

19) 이하, 도쿄지방법판소의 설시에 대한 밑줄은 저자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한 것이다.

20) 이와 관련하여, 본건 비트코인은 크라켄을 통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22년 개정된 UCC 제8편과 신설된 제12편 또는 통일가상통화업법규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에 따라 당시 원고의 권리를 증권적 권리(security entitlement)로 볼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술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17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있었던 일련의 해킹에 따라 원고의 권

크라켄에 예탁한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원고가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을 취득했다고 가정하고, 동 재산적 권리에 대해 일본법상의 소유권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본건 선결문제 3(권리의 대체 문제)에 대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즉, 권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는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이 일본법상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객체에 관한 배타적인 처분권한이라고 인정될 필요가 있고, 이 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654조에서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the ownership of a thing)는 관련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라고 정의되고, PR에 대해 배제권, 양도권, 점유 및 사용권과 파괴권의 권리의 묶음이라고 해석되는데, PR의 객체가 되어야 하는 재산에는 동산, 주식, 사채, 특허권, 기업비밀 등의 다양한 것이 포함되는바, PR이 포함하는 상기 권리 중 특히 배제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체와 관련한 권리에 있어서도 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해석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 법상의 논의로서, 거래소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원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조차 할 수 없거나, (가사 사실상 보유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권원(title)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음은 물론, 관련 고객이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과 관련된 security entitlement라고 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관련 권리가 비트코인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인 것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원고가 크라켄에 예탁한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을 취득했다라도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배타적인 처분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가지는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권리를 일본법상의 소유권으로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과 유사한 권리로서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일본법상의 소유권을 관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크라켄에 예탁한 시점에서도, 피고 관리주소 1 송금 후에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서도 가상통화거래소에서 고객의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주소를 통해 보관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권리로서 본건 비트코인이 도달한 주소에 대응하는 개인암호키를 원고가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해당 주소와 관련한 UTXO에 근거한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권한을 전속적으로 가지고 있

리가 멸실된 것이므로, 캘리포니아주는 통일가상통화업법규정을 2024년에 채택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느 경우에도 증권적 권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가상통화업법규정의 채택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의 링크(<https://www.uniformlaws.org/committees/community-home?communitykey=e104aaa8-c10f-45a7-a34a-0423c2106778>)를 참조.

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객체의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필요하지만,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가상통화거래소를 통해 가지는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일본법상의 소유권을 관념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원고가 크라켄에 예탁한 본건 비트코인에 대하여 권리를 대체한 후에 일본법상 소유권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결과 원고가 본건 비트코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 2~5에 대한 판단

쟁점 2(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재산적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4(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UTXO를 이전할 수 있는 지위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크라켄에 예탁한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을 취득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이를 차치하더라도 권리의 대체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그 원인된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따라(통칙법 제13조 제2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효력 등은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동조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고, 원고가 취득했다고 하는 본건 비트코인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을 대체하는 대상은 이와 유사한 일본법상의 물권이므로, 물권이 아닌 '재산적 가치'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고 재판소는 판단하였다. 가사 재산적 가치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보면, 일본법상 소유권으로의 대체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

재판소는 본건 비트코인의 UTXO를 이전하는 것이 민법 제709조에 따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쟁점 4의 주장과 같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개인암호키를 가지고 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관계도 없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피고가 관리하는 주소에 도달된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이익을 가지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원고가 거론하는 각종 법령도 스스로 개인암호키를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한 사법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기초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709조에 따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소는 쟁점 4에 관한 원고

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쟁점 3(원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 PR의 불가침성 침해 여부)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원고가 크라켄에 예탁한 본건 비트코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법상의 PR을 취득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독자적인 해석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쟁점 5(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본건 청구권에 대한 권리발생원인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원고가 7월 28일 당시에 본건 계정의 관리자였는지 여부, 원고가 같은 날까지 어떤 경위를 거쳐 본건 비트코인을 취득해 크라켄에 예탁했는지, 같은 날 이후의 본건 계정으로의 접근 및 본건 출금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며, 본건 전체 증거에 의해서도 본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건 출금에서 피고 관리주소 1 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주소를 경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전의 경과에 있어 본건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피고 관리주소 1 송금에 이르러 소멸하는 것(피고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본건 전체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재판소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III. 도쿄지방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UNIDROIT 및 HCCH를 비롯한 외국에서의 입법현황과 논의에 대한 소개를 겸하여

1. 도쿄지방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가. 국제사법적 쟁점과 도쿄지방법재판소 판단의 요약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가진 권리는 물권적 권리로서 미국의 디지털토론거래소인 크라켄에 예탁되었을 당시 절취행위가 있었고 당시 원고는 캘리포니아 민법상 property right(재산권 내지 물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절취자의 해킹과 그에 따른 본건 비트코인의 무단 이전에 따라 부당하게 피고의 혼합계좌로 혼용됨에 따라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은 디지털토큰과 관련된 국제불법행위에 적용될 준거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되었고, 그 전제로서 별도로 디지털토큰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경우 물권적 측면에 적용될 준거법도 문제 되었다. 아울러, 한 국가에서 완성된 디지털토큰에 대한 물권적 권리가 다른 국가로 이전되었을 경우 해당 물권적 권리의 유효성과 그 효과를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 되었다.

우선, (1) 불법행위와 관련한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도쿄지방법재판소는 원고가 디지털토큰거래소를 통해 보유하였던 본건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의 성질과 물권적 권리의 보유 여부에 대한 쟁점은 선결문제로서 불법행위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다음으로 (2) 원고가 크라켄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물권적 권리는 문제된 비트코인이 보관되고 있던 크라켄의 본점 소재지인 캘리포니아주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왜 캘리포니아주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는다. (3) 디지털토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캘리포니아주법상 원고가 PR을 취득·보유하지 못했지만, 원고가 이를 취득·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의 디지털토큰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최종 이전되었을 경우 해당 PR과 유사한 물권적 권리를 원고가 보유하는가와 관련하여, 도쿄지방법재판소는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리의 대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한 후 원고가 비트코인을 직접 개인암호키를 가지지 않고 디지털토큰거래소를 통해 간접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본법상 소유권 내지 물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4) 도쿄지방법재판소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한 준거법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크라켄에서의 해킹에 의한 불법이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코인체크 단계에서의 혼합 계좌로의 혼입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전체 증거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평가

비트코인은 디지털토큰 중에서도 이른바 ‘가상자산’, ‘암호자산’ 또는 일반적으로 코인 등으로 불리며, 이 같은 디지털토큰(코인)이 국제적인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디지털토큰이 국제적으로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토큰의 쉽고 빠른

국제적 이전가능성과 다른 자산에 비해 용이한 법화로의 환가가능성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해킹은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북한이나 러시아 등 설사 해킹의 근원지를 밝히더라도 그 범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토큰의 해킹이 있게 되면 해커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당 디지털토큰을 관리 하던 디지털토큰거래소 등의 중개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¹⁾ 도쿄지방법판소가 다룬 이 사건도 구체적으로 해킹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불명의 해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크라켄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비트코인을 해킹하여 복수의 계정으로 분산한 후 다시 이를 일본 소재 거래소인 코인체크의 혼합계정(주소)으로 이전된 것이 추적되어 해커가 아닌 코인체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²²⁾

국제사법적 측면에서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지만 피고의 그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도난당한 본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다룰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법상 선결문제이고,²³⁾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선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한다고 보는 것에 큰 이론(異論)이 없다.²⁴⁾

- 21)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토큰거래소에게 직접적인 IT시스템과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IT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보다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는 김정민,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025. 6. 25 디지털금융혁신포럼 발표자료(미공개) 참조.
- 22) 다만, 원고가 해킹이 직접 발생한 크라켄이 아니라 원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코인체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해킹이 발생하면, 해당 해킹이 발생한 해당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23) 이와 관련해서는 석광현, 『국제사법 준거법편』, 제2판, 박영사, 2025, 58~66면; 신창선·윤남순, 『신국제사법』, 제2판, 피데스, 2016, 129~132면; 최흥섭, 『한국 국제사법 I』, 한국학술정보, 2019, 93~96면 및 177~184면; 안춘수, “국제사법상 선결문제”,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2015), 217면 이하 참조.
- 24) 최흥섭, 위의 책, 95면(최흥섭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내국선결문제(Erstfrag)라고 하고, 준거법에 따라 연결된 외국실질법의 적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선결문제를 외국선결문제라고 칭하며, 전자에 대해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이 없다고 하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준거외국 국제사법설과 법정지 국제사법설 중 원칙적으로 법정지 국제사법설이 타당하다고 한다. 석광현, 위의 책, 59면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며, 최흥섭 교수의 내국선결문제라는 용어 대신 선행문제 또는 저촉법적 선결문제라고 한다(각주 89)). 국내에서는 선결문제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선행문제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실질규범상 법률효과가 문제되는 경우(선결문제)가 아니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지정 이전에 저촉규정상 법률요건 내에서의 법률효과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 도쿄지방법판소가 어떤 논리로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법정지 국제사법설을 인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정지의 국제사법인 통칙법의 해석론으로서 원고가 크라켄을 통해 취득·관리하고 있던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곳을 캘리포니아주로 보았고, 이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캘리포니아주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득·관리하고”라는 문구에서 취득은 물권적 측면이므로, 통칙법상 물권과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목적물 소재지법(제13조)을 적용하여 비트코인의 소재지로서 크라켄의 본점소재지에 해당 비트코인이 소재한다고 보고 캘리포니아주를 연결점으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일본 국제사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니므로 비트코인의 물리적 소재지법으로서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크라켄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있었으므로, 소재지로서 원고와 크라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른바 ‘관련중개기관소재지’(Place of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 PRIMA)²⁵⁾로서 크라켄의 소재지²⁶⁾인 캘리포니아주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도쿄지방법판소가 캘리포니아주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결점으로 본 것은 원고가 가지는 권리를 반환청구권으로 성질결정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원고가 이를 주장한 바도 없고 해당 권리의 성질을 결정할 준거법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행문제에 해당한다.

- 25) PRIMA(Place of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는 간접보유증권과 관련하여 주창된 연결점으로서, 유럽에서는 관련중개기관계좌소재지(Place of Relevant Intermediary Account)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한 소개로는 석광현, “국제적 담보거래의 준거법”, 증권법연구 제5권 제1호(2004), 47면 이하; 천창민,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2013), 486면 및 501~506면 참조. 참고로, 디지털토큰과 관련해서는 PRIMA라는 약칭 대신 관련운영관리자소재지(Place of the Relevant Operating Authority/Administrator, PROPA)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FMLC에 따르면, PROPA는 금융시장의 맥락상 DLT 시스템은 (1) 허가형(=폐쇄형, 비공개형)이어야 하고 (2) 분산권한이지 않아야 하며(not centralized), 중앙의 운영관리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DLT 시스템이 비트코인과 같이 공개형이고 분산권한에 의해 작동할 경우 관련운영관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PROPA가 적용되는 DLT 시스템은 전통적인 IT 시스템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폐쇄형(private=non-permissioned) DLT 시스템에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운영자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상세는 FMLC,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Governing Law: Issues of Legal Uncertainty, March 2018, 18~19면 참조).
- 26)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관련중개기관소재지이라고 할 때, 그 소재지는 해당 유가증권이 간접적으로 보관된 계좌를 관리하는 곳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좌개설 장소 내지 영업점이 있는 곳이 해당 소재지로 결정된다. 그러나 디지털토큰거래소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만약 PRIMA를 최밀접관련지라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에서 도쿄지방법판소는 크라켄의 본점소재지를 관련중개기관소재지로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리 법정지법에 따라 반환청구권이라고 성질결정한 후 다시 해당 채권의 소재지에 대해 통칙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캘리포니아주를 연결했다는 것은 물권관계와 채권관계에 대해 다른 연결점을 규정하는 통칙법의 구조상 성립하기 어려운 가정이다. 어느 경우이든, 도쿄 지방재판소가 어떤 논리로 캘리포니아주가 최밀접관련지인지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아 법발견의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보관지의 이전에 따른 이른바 ‘권리의 대체’ 문제는 국제물권법의 해석론상 동산물권의 소재지변경에 따른 문제와 유사하다.²⁷⁾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구소재지에서 완성된 물권이 신소재지로 옮겨진 경우 신소재지에서의 해당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승인 내지 평가로서, 구소재지법상 물권을 신소재지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²⁸⁾ 이 경우 국제사법의 이론은 전치(Transposition) 내지 치환(Umsetzung)의 법리에 따라 신소재지법상 기능적으로 동등한 제도로 치환하여 신소재지법상으로 그 물권을 받아들인다.²⁹⁾ 그러나 치환의 법리로도 신소재지법상 기능적으로 동등한 물권으로서 인정할 수는 없다면 신소재지에서 이를 물권으로서 주장할 수 없게 되지만, 다시 해당 물권을 인정하는 제3국으로 다시 문제된 동산이 이전하게 되면 해당 물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³⁰⁾ 즉, 치환의 법리에 따라 신소재지법에서 구소재지법에 따른 물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권은 신소재지에 머무는 동안 물권으로서의 지위가 정지되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물건이 다시 동 물권을 일정하는 제3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물권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도쿄지방법재판소는 원고가 구소재지법인 캘리포니아법으로도 재산권(PR)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지만, 가사 재산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소재지인 일본법상 소유권이나 물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유권 내지 물권을 취득하지 못했

27) 이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노태악 대표편집, 『온주 국제사법』, 제33조(천창민 집필부분), 로앤비, 2023, 제33조 Ⅲ.2.나. 소재지의 변경과 준거법변경 부분; 천창민, “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규정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40권 제1호(2023), 157~161면; 석광현, 앞의 책, 291~297면 참조.

28) 다만, 도쿄지방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치환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도쿄지방법재판소는 원고가 캘리포니아주법상 재산권(PR)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신소재지인 일본에서 물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치환을 설명하는 이유는 관련 쟁점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

29) 천창민, 위의 논문, 160면; 천창민, 위의 주석서, 제33조 관련 부분 참조.

30) 천창민, 위의 논문, 160면; 천창민, 위의 주석서, 제33조 관련 부분 참조. 일본에서의 해석도 동일하다(櫻田嘉章·道垣内正人 編集, 『注釈国際私法』, 第1巻, 有斐閣, 2011, 387~388면(竹下啓介 집필) 참조).

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물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가 권리자로서 그 어떤 지위도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토큰도 간접보유증권과 유사하게 관련중개기관의 법역에 따라 그 권리의 성질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고, 본건 비트코인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상 원고의 권리가 물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인정한다면 일본에서도 물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정할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인정하였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된다.³¹⁾

요컨대, 도쿄지방법판소의 이 사건 판결은 간접보유된 디지털토큰의 불상의 자에 의한 절취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제로서 원고가 문제된 비트코인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을 선결문제로 다루었다. 하지만 간접보유된 디지털토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주법을 선택한 것인지는 모호하다. 전반적으로 국제사법적 측면에서 보면, 도쿄지방법판소는 판결은 적어도 국제사법적 고려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와 관련한 중의가 모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족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아래에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관련 논의와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의 저촉규칙 및 주요국에서의 논의 및 입법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³²⁾

2.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촉규칙과 HCCH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

가.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촉규칙

UNIDROIT는 디지털자산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0년부터 작업반(working group)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2023년 5월 10일 이사회에서 최종안(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이하 디지털자산원칙)과 해설서³³⁾

31) 일본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불법행위지법과 법정지법을 중첩적으로 지정하여 이 둘을 모두 적용한다. 따라서 법정지법인 일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32) 이하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촉규칙 및 주요국의 전반적인 논의 및 입법 상황에 대해서는 천창민,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2023, 185~217면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기초하되, 최근의 논의와 상황을 업데이트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하기로 한다.

33) 디지털자산원칙의 원문과 해설서는 다음의 링크(<<https://www.unidroit.org/wp-content/uploads/2024/01/>

를 채택하였다.³⁴⁾ 디지털자산원칙은 서문(forwards)과 총 19개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칙 5가 단계적 방식의 연결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 5에서 제시하는 저촉규칙의 핵심은 물권적 측면에 관한 주관적 연결의 도입이다. 즉, 원칙 5는 디지털자산³⁵⁾ 자체에 물권적 쟁점에 대해 특정 국가의 내국실질법과 해당하는 경우 그 디지털자산 자체에서 명백하게 규정하는 물권적 쟁정에 관한 원칙³⁶⁾을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이를 1순위 연결점으로 규정한다. 다음으로 1순위 연결점이 없는 경우 디지털자산이 기록된 시스템³⁷⁾에서 명백하게 규정하는 특정 국가의 내국실질법과 해당하는 경우 그 디지털자산이 기록된 시스템에서 명백하게 규정하는 그러한 원칙이 2순위의 연결점이다. 즉, 1순위와 2순위 모두 주관적 연결점을 채택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자체 또는 디지털자산을 기록하는 시스템에서 발행인 내지 시스템 운영자가 지정한 특정 국가의 실질법 또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실질규칙이 1순위와 2순위의 연결점이다. 3순위의 연결점은 1순위와 2순위의 연결점이 없는 경우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이 있는 경우 그 발행인의 법상 본거지이다. 3순위부터는 객관적 연결점이 부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4순위 연결점은 1~3순위의 연결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연결규칙은 보관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원칙 10~13이 적용되며, 해당 간접보유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원칙 10~13에서 규정하는 사항³⁸⁾은 보관계약의 준거법 또는 보관계약에서 명백하게 규정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원칙 5(3)). 즉, 디지털자산원칙은 간접보유디지털자산에 관

Principles-on-Digital-Assets-and-Private-Law-linked-1.pdf>)에서 입수할 수 있다.

- 34)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에 대한 해설로는, 김상중, “가상자산의 지배와 민사법적 성질”, 비교사법 제 31권 제4호(2024), 83면 이하; 신지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명지법학, 제23권 제2호(2025), 195면 이하; 천창민,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은행법연구 제 18권 제1호(2025), 111면 이하 참조.
- 35) 디지털자산원칙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디지털자산이라는 동의어의 공식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36) 이는 한 나라의 법체계를 전체를 지정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특정인이 작성한 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준거 실질규칙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 37) 디지털자산원칙상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시스템을 사용하는가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디지털자산을 ‘지배(control)’할 수 있다면 디지털자산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 38) 다만 원칙 10~13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물권적 측면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어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물권적 측면에 대해서도 주관적 연결을 허용한다. 간접보유디지털자산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이유는 해설서에도 명백하게 서술하지는 않고 있으나, 간접보유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과 보유자와의 관계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해설서에서는 이 같은 주관적 연결점을 둬으로써 디지털자산 개개별로 다른 준거법이 적용되는 것보다 원칙 10~13에서 규정하는 쟁점이 하나의 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고, 보관기관관계는 다른 법들보다는 하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⁹⁾

요컨대,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은 이른바, ‘온체인’ 거래에 대해서는 주연결점으로 서 디지털자산 자체 또는 해당 디지털자산이 기록된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법이나 자체적으로 규정한 실질규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보관기관을 통한 간접보유 디지털자산의 거래 즉, ‘오프체인’ 거래에 대해서도 주관적 연결을 도입하되, 이 경우는 디지털자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보관기관과 보유자의 관계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관계약의 준거법이나 보관계약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보관기관을 통해 간접보유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디지털자산판 PRIMA를 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자산원칙상 저촉규칙은 물권적 측면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관계 예컨대 불법행위책임 등에 대한 쟁점이나 국제판관할에 관한 연결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는 동 원칙이 국제사법을 다루기 위해 성안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물권적 쟁점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다음에서 소개하는 HCCH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는 망라적인 형태의 연결규칙 등을 도입할 것을 예정이다.

나. HCCH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⁴⁰⁾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총무정책이사회(CGAP)의 위임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디지털토큰 프로젝트의 탐색단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⁴¹⁾ 2024년 5월 15일 온라인으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여 상설사무국이 사전에 배포한 ‘범위설정문서(Scope Paper)’ 초안에 대

39) UNIDROIT, *Unidroit Digital Asset and Private Law Principle*, 2023, 48면 문단 5.18.

40) 이는 HCCH, *Report on Exploratory Work: Digital Tokens Project*, Prel. Doc. No 4, March 2025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을 밝히며, 이하 이에 관한 세세한 각주는 생략하기로 한다.

41) 2024년 3월 이전까지의 경과에 대해서는, 천창민, 앞의 논문(2023), 187~188면 참조.

한 논의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6월10일~14일까지 대면 및 온라인으로 수정된 범위설정문서에 대해 논의하고, 프로젝트에서 연구할 구체적인 디지털토큰 사용사례의 목록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24년 10월 7일~9일 대면 및 온라인으로 제2차 실무회의 및 기술원탁회의를 개최하여 탐색단계의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작업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전문가그룹(WG)을 구성하여 연구를 계속할 것을 CGAP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우선 프로젝트의 배경으로서, 탈중앙화시스템(분산시스템)은 여러 지역에 노드가 분산되어 있어 단일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고(Omniterritorial)과 익명성으로 인해 관련자의 식별도 어렵기 때문에 자산의 물리적 장소에 기반한 전통적인 국제사법 분석방법은 탈중앙화라는 분산원장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탐색단계 논의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연구의 범위를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로 하여 전체론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디지털토큰 관련 국제협력메커니즘 개발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점에서 UNIDROIT의 디지털자산원칙과 큰 차이가 있다. 다만, 검토대상인 관련 국제규범으로서 UNIDROIT의 디지털자산원(PDAPL)을 포함하여 UNCIREAL의 이전가능전자기록모델법(MLETR)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합의하였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디지털토큰의 기능과 실제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적 접근방식을 취하기로 하고, ‘디지털토큰’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되, (1) 이는 권리를 표창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배타적으로 배정된 데이터로서, (2)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3) 분산원장기술과 같이 분산(탈중앙화) 메커니즘에 의존한다는 세 가지를 디지털토큰의 핵심적인 개념 요소로 제시하였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디지털자산의 개념은 실질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분산원장기술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설정된 것인 반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이 노정하는 국제사법적 난점을 감안하여 디지털토큰의 개념요소에 분산원장기술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결점에 대한 제시는 없고, 회의에서 다음의 사항을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첫째, 다른 국제사법적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준거법 및 법선택

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를 하되, 국제적 강행규제와 공서의 고려에 의해 당사자 자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둘째, 디지털토큰을 위한 일반적인 저촉규칙의 기본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토큰에 대한 구체적인 저촉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모색한다. 셋째, 실질사법의 기본구조 내에 준거법과 관련한 조항의 활용을 위한 연결점을 탐구한다. 넷째, 물권, 계약, 불법행위, 원상회복 등의 쟁점에 대해 성질결정하여 이에 대한 쟁점을 검토한다. 다섯째, 완전한 탈중앙화(분산화) 및 법정지 실질법의 부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국제사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여섯째, 양도가능 증권과 연계자산의 다른 하부 유형을 포함하여 연계자산과 관련한 연결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양도불가능자산에 대해서도 논의한다.⁴²⁾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판결례는 준거법이 아니라 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것이므로, 준거법 논의와 병행하여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쟁점도 연구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연구하되, 우선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작업을 완성한 후 이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요컨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탐색적인 작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실무의 발전이 빨라서 그와 관련한 현상 파악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도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연결규칙의 제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된다. 그리고 최종문건의 형식도 협약일지 아니면 원칙일지 등도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을 정도로 규범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만 것이 없는 상황이다.

3. 주요국에서의 논의 및 입법 현황

가. 미국과 스위스

미국의 디지털토큰 관련 입법은 2018년 통일주법전국위원회(NCCUSL)의 관련 모델법의 제정과 2022년 UCC(통일상법전) 제12편의 신설 등을 통해 완성되었다. 2018년 입법은

42) 이상의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 논의에서 동 쟁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Uniform Supplemental Commercial Law for the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Currency Businesses Act(통일가상통화업법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디지털토큰거래소 등을 통해 디지털토큰(가상통화)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관한 실질법과 저촉규칙의 마련이었다. 통일가상통화업법규정은 UCC 제8편의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실질규칙과 저촉규칙(제8-110조)을 흡수하여 디지털토큰사업자와 보유자 간의 민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온체인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 7월 ALI와 NCCUSL이 공동으로 UCC 개정 작업을 통해 제12편을 신설하여 디지털토큰(지배가능전자기록, 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s)의 직접 보유와 관련한 물권적 쟁점에 대한 실질규칙 및 저촉규칙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UCC 제12편의 신설 시 제8편과 제9편도 같이 디지털토큰을 수용하는 개정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UCC 제8편의 공식주석에 디지털토큰(지배가능전자기록)이 ‘금융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증권중개기관을 통해 디지털토큰을 보유하는 경우 제8편 제5장의 적용대상인 ‘증권적 권리’ 즉, security entitlement가 될 수 있도록 2018년 제정된 통일가상통화업법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였다.⁴³⁾

신설된 UCC 제12편의 핵심은 지배가능전자기록이라는 미국판 디지털토큰 개념이고, 이는 사실상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상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며, 관련 실질규칙 또한 디지털자산원칙과 매우 흡사하다. 실질규칙뿐만 아니라 저촉규칙도 디지털자산원칙 원칙5에서 제시하는 단계적 연결규칙과 매우 유사하다. 디지털자산원칙은 국제기구가 제정했고 UCC 제12편보다 늦게 채택되었기 때문에 발행인의 본거가 추가된 점 등에서만 다르지 1순위~4순위 원칙은 디지털자산원칙의 주관적 연결점 즉, 디지털자산 자체(1순위) 또는 디지털자산이 기록된 시스템(2순위)에서 규정하는 국가로 연결하여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법으로 물권적 쟁점을 규율하도록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UCC 제12-107조 제(c)호는 5개의 단계적 연결을 시도하는데, 1순위와 2순위는 주관적 연결에서 UCC 제12-107조 또는 UCC의 목적상 특정 법역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1순위는 지배가능전자기록 자체에서 규정하는 법역, 2순위는 지배가능전자기록이 기록된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법역이 연결점이다. 3순위와 4순위는 제12-107조 또는 UCC의

43) 2022년의 개정은 UCC의 개정이고 대부분의 주에서 UCC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UCC의 간접보유증권과 관련한 규정이 디지털토큰의 간접보유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주에서 2018년에 제정된 통일가상통화업법규정을 별도로 채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특정법역의 특정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1순위 및 2순위와 동일하게 3순위 및 4순위는 각각 지배가능전자기록 및 지배가능전자기록이 기록된 시스템에서 특정하는 법역이 연결점이다. 마지막으로 5순위는 1~4순위의 연결점이 없는 경우 컬럼비아특별구가 연결점이 된다.

디지털자산원칙과 다른 점은 기술한 발행인의 본거를 연결점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⁴⁴⁾과 법정지법이나 법정지의 국제사법을 연결점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인데, 후자는 UCC가 원칙상 미국의 주간 거래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모델법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요컨대, UCC 제12편의 연결규칙은 UNIDROIT의 디지털자산원칙과 같이 물권적 측면에 대해서도 주관적 연결을 도입한다는 점이며, 디지털자산원칙보다 더 철저하게 주관적 연결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디지털자산원칙에서는 발행인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지만 발행인의 본거라는 객관적 연결점을 두고 있는 반면 UCC 제12편은 그러한 객관적 연결점을 인정하지 않고, 주관적 연결점이 없는 경우 보충적인 객관적 연결점으로서 컬럼비아특별구법을 곧바로 연결한다. 5순위 연결점을 두는 것도 사실상 상당수의 기 발행된 디지털토큰이나 해당 시스템에서 준거법선택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UCC 제12편이야말로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물권적 측면에 대해서도 주관적 연결에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론적으로 UCC 제12-107조 제(c)호 제1목~제4목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제3자가 예견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물권적 측면에 대해 주관적 연결을 도입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도 민사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⁴⁵⁾가 2025년 6월 5일 디지털자산의 국제사법적 측면과 관련한 공개의견수렴문건(Consultation Paper)⁴⁶⁾을 공간하여,⁴⁷⁾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 그 결과

44) 디지털자산원칙이 발행인의 본거를 3순위 연결점으로 도입한 것은 논의 과정에서 유럽국제사법협회의 워킹그룹이 제시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45)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Law Commissions Act of 1965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법률 자문기관이다. 법률위원회는 현행법이 오래되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불명확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법개혁 제안을 하여, 기존 법의 문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를 제안한다. 재정적으로 영국 법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만, 법적·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46) 법률위원회는 먼저 연구주제를 선정한 후 공개의견수렴문건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

를 발표할 예정이다.⁴⁸⁾ 의견수렴문건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기존의 속지성(territoriality)에 기반한 전통적인 국제사법상 연결점은 분산원장기술의 등장에 따른 분산자율조직(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 DAO)⁴⁹⁾ 등 탈중앙화(분산화)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편지성(遍地性) 내지 탈속지성(omniterritoriality)⁵⁰⁾이 특징인 완전 분산시스템에서 어느 한 법역으로만 연결하는 현재의 국제사법 방법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완전 분산시스템에 적합한 연결규칙을 찾자는 것이 의견수렴문건의 핵심이다. 따라서 완전 분산시스템이 아닌 디지털토큰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국제사법의 해석상 이를 연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수렴문건의 핵심은 중앙화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온체인 분산시스템상 계약적, 비계약적, 물권법적 쟁점 등에 대한 연결규칙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¹⁾

우선 방법론적 관점에서 의견수렴문건은 단일의 연결점을 찾는 전통적인 다면적 접근법(multilateralist approach)은 완전 분산시스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법원으로 하여금 재량으로 한 국가의 법이 아니라 분산원장시스템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실질규칙을 편입하여 소송의 정당처분(the just disposal of proceedings)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초국가적 접근법(supranational ap-

견에 기초하여 공공의견수렴문건을 만들어 최종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뒤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최종보고서에서 제안한 제안이나 법안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해당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의 의견수렴은 1차 의견수렴에 해당한다.

47) 동문건의 제목은 Digital assets and (electronic) trade document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Section 72 of the Bills of Exchange Act 1882: Consultation paper이며, 동 문건은 다음의 링크(<<https://cloud-platform-e218f50a4812967ba1215eaecede923f.s3.amazonaws.com/uploads/sites/54/2025/06/Digital-assets-conflicts-CP-2025.pdf.pdf>>)에서 입수할 수 있다. 영국 법률위원회의 동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다음의 웹페이지(<<https://lawcom.gov.uk/project/digital-assets-and-electronic-trade-documents-in-private-international-law/>>)를 참조.

48) 영국 법률위원회의 동 의견수렴문건의 공간 이전 영국에서의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의 소개로는 천창민, 앞의 논문(2023), 197~200면 참조.

49) 통상 탈중앙화자율조직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다.

50) Omniterritoriality라는 용어는 오스트리아대학의 Matthias Lehmann 교수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편지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탈속지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51) 의견수렴문건은 국제제판관할과 관련한 현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제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가까운 장래의 과제로 남긴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Law Commission, Digital Assets and (Electronic) Trade Document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Section 72 of the Bills of Exchange Act 1882: Consultation paper, Consultation Paper No 273, 05 June 2025, 70~123면 참조.

proach)을 제안한다.⁵²⁾ 이는 사실상 미국 국제사법상 정부이익분석과 유사하게 법원이 사안을 미리 정해진 연결점에 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개방적 조문으로 구성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기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니라 분산시스템 자체의 규칙, 백서(white paper) 등과 같은 당사자자치 내지 발행인에 의해 규정된 준거실질 자치규칙을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⁵³⁾ 이 점에서 디지털자산에 한정된 것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영국도 디지털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 ‘영국판 국제사법의 혁명’을 시도하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한 논의의 진행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핵심은 완전히 분산화된 분산원장시스템의 경우 당사자 자치에 의해 형성된 실질규칙을 국제사법적 측면에서 인정하고,⁵⁴⁾ 이와 관련한 결정에서 미리 고정된 연결점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적 분석으로 준거법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질규칙을 준거규범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공서 또는 국제적 강행규정의 측면에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강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은 완전히 분산화된 금융(탈중앙화금융: DeFi)에서 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존재와 유효성의 문제 및 비트코인과 같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하여 발행되는 암호토큰과 관련한 물권관계(property relationships)에 모두 적용가능하다.

요컨대, 미국은 UCC 제12편을 신설하여 지배라는 개념을 기초로 온체인상의 디지털토큰(지배가능전자기록) 거래와 관련한 정적·동적 측면에 대한 물권적 측면의 실질규칙과 저촉규칙을 동시에 정비하였다. 그중 저촉규칙을 규정하는 제12-107조는 다섯 가지의 단계적 연결을 제시하나 1~4순위의 원칙은 사실상 UNIDROIT의 디지털자산원칙상 1순위 및 2순위 규칙과 동일하게 주관적 연결점을 도입하되, 보충적으로 5순위의 컬럼비아특별자치구라는 객관적 연결점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이는 물권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제3자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물권적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주관적 연결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자산원칙을 비롯하여 위의 영국 사례도 사실상 주관적 연결을 인정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실질법의 정비와 더불어 국제사법적으로 주관적 연결에 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52) Law Commission, 위의 의견수렴문건, 161~189면 참조.

53) 이는 미국 UCC 제12편 및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 원칙5에서 규정하는 바와 유사하다.

54) 이는 사실상 code is law라는 것을 국제사법적 측면에서 승인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경우, 아직 의견수렴단계이나 해당 제안의 핵심이 확정된다면 영국도 사실상 주관적 연결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법론적으로 전통적으로 미리 정해진 연결점이 아니라 당사자의 기대와 고려를 감안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가장 밀접한 연결점으로서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정한 약관, 백서 등 비국가 규칙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다소 도발적이나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그러한 방식의 장단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예외규정으로서 국제사법 제21조에서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논의 상황을 제21조의 적용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독일과 스위스

아직까지 독일과 스위스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디지털토큰 전반에 대한 국제사법적 정비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나, 적어도 증권토큰(security token)에 대한 실질법 및 저촉규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독일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유가증권법(Gesetz zur Einführung elektronischer Wertpapiere, eWpG)의 제정으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토큰에 대한 실질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유가증권법 제2조 제2항은 전자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된 유가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동조 제3항에서 전자유가증권을 민법상 물건으로 간주하여 전자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종래와 동일한 방식의 물권법적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유가증권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저촉규칙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증권예탁법(Depotgesetz) 제17a조⁵⁵⁾와 유사한 방식의 관련중개기관 접근법 즉, PRIMA를 채택한다. 즉, 전자유가증권법 제32조는 증권예탁법 제17a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유가증권에 대한 권리 및 전자유가증권의 처분은 그 전자유가증권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유가증권등록부의 등록부관리기관을 감독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되(제1항), 그 등록부관리기관이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1순위로 그 등록부관리기관의 본거로 연결하며, 그 등록기관의 본거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그 전자유가증권 발행인의 본거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주의할 것은 전자유가증권법 제32조는 전자유가증권이 증권예탁법에 따라 혼장보관되면 증권예탁법 제17a조가 규정하는

55) 증권예탁법 제17a조와 관련한 소개로는, 천창민, 앞의 논문(2013), 521~524면 참조.

연결점(유가증권등록부 감독소재지 또는 계좌관리기관소재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자유가증권법 제32조는 증권예탁법 제17a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증권예탁법 제17a조와 전자유가증권법 제32조의 연결점이 등록부 관리기관의 감독(기관)소재지로 통일되어 있어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위스도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DLT법⁵⁶⁾에 따라 국제사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증권토큰과 관련한 연결점을 신설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국제사법은 제105조 제2항(담보권),⁵⁷⁾ 제106조(물품증권)를⁵⁸⁾ 개정하고, 제145a조(증표에 의한 양도)⁵⁹⁾를 신설하여, 증권토큰에 대한 국제사법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다만, 독일과 동일하게 스위스의

56) DLT법의 정식명칭은 전자적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률(Bundesgesetz zur Anpassung des Bundesrechts an Entwicklungen der Technik verteilter elektronischer Register)이다.

57) 제105조 전체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105 3. Besondere Regeln a. Verpfändung von Forderungen, Wertpapieren und anderen Rechten

1. Die Verpfändung von Forderungen, Wertpapieren und anderen Rechten untersteht dem von den Parteien gewählten Recht. Die Rechtswahl kann Dritten nicht entgegengehalten werden.
2. Fehlt eine Rechtswahl, so untersteht die Verpfändung von Forderungen dem Recht am gewöhnlichen Aufenthalt des Pfandgläubigers. Für die Verpfändung anderer Rechte gilt dasselbe, sofern diese durch ein Wertrecht, ein Wertpapier oder einen gleichwertigen Titel vertreten werden; andernfalls untersteht ihre Verpfändung dem auf sie anwendbaren Recht.
3. Dem Schuldner kann nur das Recht entgegengehalten werden, dem das verpfändete Recht untersteht.

58) 제10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106 b. Warenpapiere und gleichwertige Titel

1. Das in Artikel 145a Absatz 1 bezeichnete Recht bestimmt, ob ein Titel Waren vertritt.
2. Vertritt ein physischer Titel die Ware, so unterstehen die dinglichen Rechte am Titel und an der Ware dem Recht, das auf den Titel als bewegliche Sache anwendbar ist.
3. Machen verschiedene Parteien dingliche Rechte an der Ware geltend, die einen unmittelbar, die anderen aufgrund eines Titels, so entscheidet über den Vorrang das auf die Ware selbst anwendbare Recht.

59) 제145a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 145a 1a. Übertragung mittels eines Titels

1. Ob eine Forderung durch einen Titel in Papier- oder gleichwertiger Form vertreten und mittels dieses Titels übertragen wird, bestimmt das darin bezeichnete Recht. Ist im Titel kein Recht bezeichnet, so gilt das Recht des Staates, in dem der Aussteller seinen Sitz oder, wenn ein solcher fehlt,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 hat.
2. Betreffend dingliche Rechte an einem physischen Titel bleiben die Bestimmungen des siebten Kapitels vorbehalten.

국제사법적 정비도 증권토큰에 한하며, 디지털토큰 전반에 관한 연결규칙을 정비한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개정 국제사법상 정비내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105조 제2항은 당사자의 법선택이 없는 경우,⁶⁰⁾ 채권의 담보권설정은 담보권자의 상거소로 연결하고,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담보권설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결점을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무증서증권(Wertrecht), 실물유가증권 또는 등가의 증표(Titel)로 표창된 경우에 한해 담보권자의 상거소로 연결하도록 하며, 그러한 표창이 없는 경우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담보권설정은 그 권리의 준거법으로 연결하도록 규정한다. 증권토큰은 여기서 새롭게 규정된 등가의 증표에 해당하는데, 이는 증권토큰을 그 표창하는 도구만 다르지 기존의 유가증권과 동일하다는 기능적 관점을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권에 한한 것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스위스 국제사법은 채권 또는 유가증권 등의 담보권설정에 대해 원칙 규정으로서 담보거래의 당사자간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는 점과 담보거래의 당사자간 당사자 자치라는 점에서 주관적 연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이나 미국 UCC 제12편의 주관적 연결과는 차이가 있다.

제145a조는 청구권(채권)이 실물증권이나 이와 등가인 형태의 증표에 의해 표창되었는지의 여부 및 그 증표에 의해 채권이 양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결규칙으로서, 디지털자산원칙 원칙 5 및 UCC 제12편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관적 연결과 같이 그 증표에 지정된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증표에 그 같은 법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연결점으로서 발행인의 본거를 규정⁶¹⁾한다. 이는 디지털토큰(=등가의 증표)이 특정한 채권을 표창하는지 그리고 디지털토큰의 양도에 의해 그 채권이 같이 양도되는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준거법에 대한 규정으로서, 결국 채권이 표창된 증권토큰의 양도에 대한 연결규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과 같은 사원권도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주식과 같은 사원권도 배당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 일체로서 포함된 것이므로 사원권이라고 하여 이 조항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60) 담보거래의 당사자가 채권(청구권), 유가증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해 그 담보거래의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주관적 연결점이 적용된다. 다만, 그러한 법선택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조 제1항).

61) 이는 디지털자산원칙 원칙5에서 규정하는 3순위 연결점에 해당한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사원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회사법의 특칙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으로는 후자를 이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원권에 대해서는 제145a조 제1항을 유추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106조는 물품증권에 대한 연결점을 규정하는데, 동조 제1항은 물품증권의 등가물인 증표(예: 디지털선하증권)가 물품을 표창하는지 여부를 제145a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증표에서 지정하는 법 즉 주관적 연결점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요컨대, 독일과 스위스는 디지털토큰 중 증권토큰에 한정된 국제사법적 정비를 완료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EU의 간접보유증권과 관련하여 정착된 연결점에 착안한 기존의 객관적 연결점을 고수하고 있지만, 스위스는 증권토큰에 대해서도 해당 증권토큰에서 지정하는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되, 담보거래는 담보거래의 당사자가 지정하는 법에 따라 해당 쟁점을 규율하도록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결과와 그에 따른 유럽의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증권토큰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토큰에 대해 일원적인 주관적 연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헤이그국제사법의 디지털토큰 프로젝트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V. 결론

현재 국회에 증권토큰과 관련한 실질법적 쟁점을 다루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현 전자증권법에 국제사법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 개정안에서 증권토큰과 관련한 국제사법한 고려는 전무하다. 디지털토큰의 경우 빠른 국제적 이전이 가능하고 규제적 제한이 있지만 증권토큰도 그 같은 기능적 특징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활용한 국제적 증권토큰거래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⁶²⁾ 따라서 적어도 증권토큰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통적인 간접보유 증권에 관한 연결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62) 실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DBMF)를 구성하여, 작년부터 우선 한일간 디지털채권거래를 위한 시범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외국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 영국은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 전반에 대한 개혁을 완료하였거나 개혁을 위한 준비 중이고, 그 연결점은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렴되어 있다.⁶³⁾ 이에 반해 독일과 스위스는 디지털토큰 중 증권토큰에 한정된 국제사법적 정비를 완료하였는데, 독일은 전통적인 객관적 연결을 도입하였지만, 스위스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주관적 연결을 전격 도입한 상황이다. 사실 증권토큰의 경우 중개기관의 개입이 뚜렷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나 UNIDROIT 디지털원칙과 동일한 방식의 주관적 연결까지 갈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도 있으며, 증권토큰과 그 밖의 디지털토큰의 연결점을 굳이 달리할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결정적인 이유는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된 경우나 발행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증권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중개기관이나 발행인의 소재지를 연결하는 것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쿄지방법판소의 판결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간접보유된 경우에도 크라켄의 본거(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해당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곳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증권토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점점 더 온라인에서만 영업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전통적인 방법론 즉, 특정 장소를 기초로 한 연결점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우연한 장소일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심스럽지만 증권토큰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토큰에 대해서도 채권 및 물권적 측면에 대해 주관적 연결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관적 연결의 도입 시에는 반드시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잘 정비된 디지털토큰 관련 실질규칙에 대한 정비도 필수적이다. 예컨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디지털토큰 관련 국제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신설된 UCC 제12편을 채택한 법역이 법정지로서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연결규칙인 UCC 제12-107조 제(c)호를 적용할 것이므로, 디지털토큰의 발행 시 UCC 제12편을 구체적인 준거법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하면 측면이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UNIDROIT의 디지털자산도 동일한 주관적 연결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향후 실무적으로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실질법적 정비가 잘 된 국가의 법을

63) 영국의 경우 모든 경우에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완전히 분산된 시스템의 경우에 한해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분산된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의 연결점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론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질법적 측면의 정비는 물론 국제사법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연결규칙을 국제사법 또는 관련 특별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특히 물권적 측면이라고 관련 검토에서 당사자 자치에 대해 부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제3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관적 연결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 연결점은 국제적 강행규정(규제적 관점의 제어장치)이나 공서에 의해 사후적으로 통제될 수 있으므로, 물권적 측면에 대한 쟁점을 당사자 자치에 의해 선택된 법에 의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실질법적·국제사법적 검토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헤이그국제사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토큰 프로젝트에서의 논의는 우리의 관련 검토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UNIDROIT 자산원칙의 채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음은 물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디지털토큰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간 법무부가 국제입양 등의 보다 시급한 현안이 많아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주목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생각된다. 하지만 UNCITRAL에서 이루어지는 실질법적 논의에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정부의 국제사법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솔직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물론 이제는 중국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규범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자국의 국제사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디지털토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나 향후 우리 정부의 ‘국제법무’ 행정에서 국제사법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적 문건의 성안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족한 글을 여기서 맺는다.

참고문헌

- 김상중, “가상자산의 지배와 민사법적 성질”, 비교사법 제31권 제4호(2024).
- 김정민,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025. 6. 25 디지털금융혁신포럼 발표자료(미공간).
- 석광현, 『국제사법 준거법편』, 제2판, 박영사, 2025.
- 석광현·노태악 대표편집, 『온주 국제사법』, 제33조~제37조(천창민 집필부분), 로앤비, 2023.
- 석광현, “국제적 담보거래의 준거법”, 증권법연구 제5권 제1호(2004).
- 신지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명지법학, 제23권 제2호(2025).
- 신창선·윤남순, 『신국제사법』, 제2판, 피데스, 2016.
- 안춘수, “국제사법상 선결문제”,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2015).
- 천창민,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은행법연구 제18권 제1호(2025).
- 천창민,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2013).
- 천창민,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2호(2023).
- 천창민, “국제사법상 물권 관련 규정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제40권 제1호(2023).
- 최홍섭, 『한국 국제사법 I』, 한국학술정보, 2019.
- FMLC,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Governing Law: Issues of Legal Uncertainty, March 2018.
- Law Commission [UK], Digital Assets and (Electronic) Trade Document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Section 72 of the Bills of Exchange Act 1882: Consultation

paper, Consultation Paper No 273, 05 June 2025.

UNIDROIT, *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2023.

櫻田嘉章・道垣内正人 編集, 『注釈国際私法』, 第1巻, 有斐閣, 2011.

[국문초록]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 일본 도쿄지방법판소의 디지털토큰 관련 판결을 소재로 -

천창민

분산원장기술의 출현은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미래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진보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산원장기술의 급격한 보급은 실질법적으로는 물론 국제사법적으로도 상당한 과제를 노정한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은 인터넷망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토큰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사법적 분석을 요한다. 영국은 물론 대륙법계 국가의 전통적인 국제사법적 분석의 방법론은 성질결정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성된 법률행위별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결점(국제재판관할의 경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결점(준거법의 경우)을 찾아 해당 연결점이 있는 국가의 법원과 법체계를 찾는 방법론을 취한다. 이때 그 연결점은 당사자 자치에 의한 주관적 연결을 제외하고는 물리적 장소를 연결한다. 하지만 인터넷망을 통해 복수의 노드가 존재하는 분산원장기술에서는 이같이 물리적 장소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연결점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실질적 관련이 있는 또는 가장 밀접한 연결점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지털토큰이 관여된 국제사법적 분석에서 실질적 관련지 내지 최밀접관련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국제사법의 방법론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2023년 5월 디지털토큰의 물권적 쟁점과 관련한 실질법 원칙을 마련하는 가운데, 원칙 5에서 저촉규칙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도 2022년 통일상법전(UCC)의 개정 작업을 통해 제12편을 신설하여 디지털토큰의 물권적 측면과 관련한 실질법 및 국제사법의 특칙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 그 물적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나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을 전자증권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고 PRIMA(관련중개기관접근법)를 구체화한 저촉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 내지 증권토큰을 전자증권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나 국제사법적 측면에 관한 고려는 전무하다. 이 가운데 2024년 5월 15일 키오프회의를 시작으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 디지털토

큰의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및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등 국제사법 전반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적 움직임은 없으나, 2024년 4월 도쿄지방법재판소에서 일본 최초로 디지털토큰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다룬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 논리전개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나 동 판결은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도쿄지방법재판소의 동 판결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국제적 분쟁의 일면을 살펴보았다(Ⅱ). 이어, 도쿄지방법재판소의 동 판결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비롯한 주요국에서의 디지털토큰과 관련한 입법 현황과 논의 등을 소개하고(Ⅲ), 마지막으로 외국에서의 입법 논의 및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법에의 함의를 겸한 맺음말을 도출하였다(Ⅳ). 우리 국제사법에 대한 함의 부분에서는 물권적 측면에 대해 종래 우리나라는 주관적 연결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나, 디지털토큰과 관련해서는 제3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현재와 같이 엄격한 소재지 법주의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디지털토큰, 디지털자산, 지배가능전자기록, 국제사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

[Abstract]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in Digital Token Transactions

Changmin Chun

The emergence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 expected to yield positive effect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and drive progres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future finance. However, the rapid prolifer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resents significant challenges both in substantive law and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sinc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 internationally interconnected via the internet, transactions involving digital token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ypically requir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is. Traditional private international law methodology in England as well as civil law countries employs characterization to categorize legal acts into abstract conceptual frameworks, thereby identifying connecting factors with substantial relevance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or the closest connection (for applicable law), and determining the appropriate court and legal system. These connecting factors link to physical locations, except for subjective connections based on party autonomy. However, 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with multiple nodes connected via the internet, traditional connecting factors based on physical location are often unsuitable. Furthermore, identifying the substantial connection or the most closely connected factor itself is frequently difficult. Therefore, how to identify the place of substantial connection or the place with the closest connec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is involving digital tokens has emerged as a current issue in the methodology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proposed conflict-of-laws rules in Principle 5 while developing substantive principles concerning proprietary issues of digital tokens in May 2023. Similarly,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Title 12 through the 2022 revision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providing specific rules for substantive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proprietary aspects of digital tokens. Germany, while being limited in its material scope, has established conflict-of-laws rules that incorporate security tokens as a type of electronic security and elaborate on the Place of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 (PRIMA). In Korea, efforts are underway to incorporate security tokens in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hrough amendments to the Act, but there has been no considerat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spects. Amidst this, discussions commenced at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starting with a kickoff meeting on May 15, 2024, to introduce rules covering the entire spectrum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digital tokens, including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plu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Japan has not yet enacted legislation address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for digital tokens. However, in April 2024, the Tokyo District Court issued Japan's first final judgment on these issues. Although its reasoning has some weaknesses, the decision provides a valuable precedent for analyz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concerning digital tokens. Therefore,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Tokyo District Court's decision and examines an aspect of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ing digital tokens through specific cases (Section II). Subsequently, it evaluates the Tokyo District Court's decision and reviews the legislative developments and discussions on digital tokens in major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frameworks including the HCCH and UNIDROIT Digital Assets Principles (III). Finally, it present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legislative developments abroad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V). Regarding implications fo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argues that for digital tokens, there is no need to adhere to the current strict *lex situs* rule if third-party protection mechanisms are guaranteed.

Keywords: digital tokens, digital assets, 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laws, HCCH, UNIDROIT Digital Assets Principles